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983

제안년월일 : 2020년 11월 25일
제 안 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원대상 사업에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‘골목형상점가’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○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를 아울러 ‘전통시장 등’으로 수정함(안 제2조제4호·제7호, 안 제11조).

○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6조와 제11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수정함(안 제3조제1항).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4호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”를 “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시장·상점가”를 “전통시장 등”으로 한다.

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치구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안 제11조제1항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와”를 “전통시장 등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”를 “전통시장 등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~ 3. (생 략)	1. ~ 3. (생 략)	1. ~ 3. (개정안과 같음)
4. “시설현대화사업”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이라 한다)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	4. (현행과 같음)	4. “시설현대화사업”이란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이라 한다)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5. ~ 6. (생 략)	5. ~ 6. (현행과 같음)	5. ~ 6. (개정안과 같음)
7. “청년상인”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시장·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.	7. (현행과 같음)	7. “청년상인”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전통시장 등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.
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‘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’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	제3조 (지원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	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

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	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의 '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' 및 자치구의 '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'을 반영하여야 한다.	② (현행과 같음)	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치구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③ (개정안과 같음)
제11조(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제11조(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	제11조(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개정안과 같음)
1.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	1. (현행과 같음)	1.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	2. ~ 7.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조례 제　　호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”를 “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시장·상점가”를 “전통시장 등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치구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와”를 “전통시장 등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전통시장 및 상점가”를 “전통시장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 란 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“시설현대화사업” 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 이라 한다)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	4. “시설현대화사업” 이란 전통시장,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 등” 이라 한다)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5. ~ 6. (생 략)	5. ~ 6. (현행과 같음)
7. “청년상인” 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시장·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.	7. “청년상인” 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전통시장 등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.
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‘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’(이하 “지원계획” 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제3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법 제6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 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	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

소기업청의 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’ 및 자치구의 ‘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 추진계획’을 반영하여야 한다.	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치구의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 · 운영)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	제11조(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 · 운영) ① 시장은 전통시장 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1.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3. ~ 7. (생 략)	1.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3. ~ 7. (현행과 같음)